

제 425 호

1974. 1. 1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백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재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 조례

제 812 호 : 외국인에대한 유통음식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3

◎ 훈령

제 379 호 : 서울특별시 경찰국의 임전전 규정 총

개정규정 3

◎ 공고

제 1 호 : 강호보조원자격시험 실시공고 3

제 128 호 : 역촌, 창동, 망우, 김포, 시흥 및

도봉지구토지구회정리사업변경 공고 5

◎ 예규

제 266 호 : 방송업무취급지침 5

◎ 사령 1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425 호

시 보

1974. 1. 10 16-3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외국인에 대한 유흥음식세면체에 관한 조례 제
지조례를 아래 공포한다.

⑤ 서울특별시조례 제 812호

외국인에 대한 유흥음식세면체
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610호 (1970. 3. 16)

외국인에 대한 유흥음식세면체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974. 1. 10

서울특별시장

부 칙

이조에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

⑤ 서울특별시 훈령 제 379호

서울특별시 경찰국 위임 전결규정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결
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결규정 중 다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수사관 제 6호증 제장·전료
·과장·전결로 한다.

1974. 1. 8

서울특별시장

부 칙

이 규정은 197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공고

⑤ 서울특별시 공고 제 1호

제 1회간호보조원자격시험시행시공고

1974년도 서울특별시 시설제 1회
간호보조원 자격시험을 보면 사회부령
제 428호 및 행정권한의 두점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6조제 5항 제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974. 1. 10

서울특별시장 임택식

1. 시 칠

가. 필기시험: 기초간호학개요, 보건

16-4. 제 425호

시 보

1974. 1. 10.

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요, 의료관련 법규	5. 수험표 교부 및 장소 74. 2. 6 ~ 2. 8 (3 일간) 서울특별시 보건예방과
나. 실기시험	6.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일시: 1) 필기시험: 74. 2. 10 (일) 10:00 ~ 11:40 (90분)
2. 응시자격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 상의 자격이 있는 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보건사범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기관에서 2-호보조원 훈련과정을 이수한자	2) 실기시험: 74. 2. 11 (월) 09:00 ~ 17:30
3.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소정양식의 수입증지 1,000원첨부) 1통 나. 간호보조원 수료증명서 1통 다. 선강전단서 (시험방법을 말해) 1통 라. 신원증명서 1통 마. 사진 (상반신영화판 출원전 6월 이내 찰영) 5매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사.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 본 1통	나. 장소 1) 필기시험: 한양공업고등학교 (성 동구 신당동 251) 2) 실기시험: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용산구 한남동 8~45소재)
4. 응시원서 교부 및 날짜 74. 1. 28 ~ 1. 31 (4일간) 서울 특별시 보건예방과.	7. 합격자발표 74. 2. 15 (금요일) 14:00 시 청후정계사관
	8. 기타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필기시험이 필요할 필 기도구 (청, 흑색볼펜 또는 만년필) 를 지참하고 시험당일 09:00 까 지 시험장소에 집합하여 시험감독 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보 건사회국 보건예방과에 (75-664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425 호

시 보

1973.1.10 16-5

◎ 건설부 공고 제 128 호

건설부 공고 제 8.9 호 및 11호 167.
1.21) 및 제 8 호 (68.1.23) 애 의
여 사업시행인가한 바 있는 역촌, 창동,
망우, 김포, 시흥 및 도봉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
리사업법 제 3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인가 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73.12.27

건설부 장관

가. 변경사항 (사업시행기간) :

지구명	당초 시행 기간	변경 시행 기간	비고
역·촌	1967.1.21 ~ 73.12.31	1967.1.21 ~ 74.12.31	1년
창·동	1967.1.21 ~ 73.12.31	1967.1.21 ~ 74.12.31	•
망·우	1967.1.21 ~ 73.12.31	1967.1.21 ~ 75.12.31	2년
김·포	1968.1.23 ~ 73.12.31	1967.1.23 ~ 75.12.31	•
시·흥	1968.1.23 ~ 73.12.31	1967.1.23 ~ 75.12.31	•
도·봉	1968.1.23 ~ 73.12.31	1968.1.23 ~ 74.12.31	1년

나. 기타 : 관계서류를 서울시청에 미처하고 관계인의 공판에 공단다.
(관계도서생략)

◎ 예 규

◎ 예 규 제 266 호

정 송 업 무 취 금 제 침

1. 목적

이 지침은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 등
사업소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사건
에 관하여 그수행절차와 업무취급관계

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업무
취급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2. 소 송 업 무

가. 구청장이 소송당사자인 경우
구청장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행
정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1) 총무과 (기획과) 소관
(개) 행정사건 서유접수 분류이
용

(1) 기획계에서 주관파에 이송할 때에는 「송무전」을 사용 기밀을 지정 이송하여야 한다.		(2) 소송수행자 지정서 « 양식 별첨 4 참조	
(3) 다음 사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관파를 지정한다.		(2) 사건주관파 개 용소 또는 상고방침 구청장이 피소되었거나 상고로 사건에 의거 방침을 염 야 한다.	
(4) 2개이상의 실·과에 관련된 사건 ① 주관파가 불분명한 사건 ② 송무전 양식별첨 1 참조		(1) 제 1안 내부결재 사건(사건번호, 사건명, 원, 피고명) 을 표시하고 사건개요를 적시 한 후 용소 또는 상고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정송사건 심사합의 ① 소송수행자에서 정송에 관한 방침을 알고자 할 때에는 사건에 종무 과장(기획계)의 심사를 받어야 한다. ② 기획계에서 심사합의를 할 때에 는 합의문서 우측에 「송무심사」 인을 날인하고 「정송사건심사부」를 비치하 여 합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제 2안 소송수행자 지정서 발급의뢰 사건주관파장은 송무과장(참조 기획 계장)에게 용소방침문 사본 및 소송 수행자 지정승인 공문을 첨부하여 수 령할 직원의 직성명(판례계장 및 직 원을 원칙으로 함)을 기재하여 의 뢰토록 한다.	
(6) 송무심사 인 별첨 2 참조 ③ 「정송사건심사부」 별첨 3 참조		(3) 제 3안 소송수행자 지정승인 요청 시찰(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용소 또는 상고방침문 사본을 첨부하여	
(7) 주관파에서 「소송수행자 지정 의뢰」 가 있을 때에는 심사여부를 확인 만주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날인하여 발급한다.			

피소 또는 상고보교와 아울러 소송 수행자 지정승인 요청을 한다.	(위임장 양식별첨 5 참조)
	<p>④ 제 4 항 타기 판에의 보고 「가」 항에 의거 소송계류 법원에 대응하는 견찰 청에 보고하도록 한다.</p> <p>(나) 소송 수행자</p> <p>① 소송수행자는 담당재판 및 담당직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의뢰 하여야 한다.</p> <p>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사급 직원 1인과 담당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소송 사건의 판결이 당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친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당시 고 문 변호사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 도록 할수있으나 사건에 시장(법무 담당관)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받은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소송수행자의 임무</p> <p>①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법원 에 제출</p> <p>② 소송자료수집 조사처 등 ③ 답변서, 즈비서류등의 작성 제출 및 입증</p> <p>④ 법정기일에 출장법원 등 복달</p> <p>⑤ 감정서일회 및 보고</p> <p>⑥ 소송기록과 작성 보관문서</p> <p>⑦ 각종 소송수행 빙첩문의 작성시작 및 보고</p> <p>⑧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시 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의 정리 및 처리</p> <p>(라) 소송진행보고</p> <p>소송진행 보고는 다음과 같이 구 분하여 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p> <p>① 피소보고</p> <p>소장이 접수된 때에는 기일소환장</p>

16-8	제 425 호	시 보	1974. 1. 10
및 속장사본과 유소방침사본을 첨부		⑤상고장을 제출하거나	
소송수행자 직·성명을 표시하여 소송상고이유서를 제출코자 할때에는		상고장을 제출하는	
수행자 지정승인도장과 동시에 피소자를 3일전에 시장(참조법무담당관)에 사본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참조법무담당관)에 사본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⑥진 행 보 고		⑥원고측에서 상고할때	
⑦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에는 상고기록집누를지 및 상고장		상고기록집누를지 및 상고장	
하고자 할때에는 제출 3일전에 그 사과 상고이유서를 접수한 즉시 그		접수한 즉시 그	
본을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사본을 첨부 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상대방이 제출한 청구취지		⑧원고측에서 상고한	
변경 또는 준비서면 등을 접수한 때에		경우 상고이유서가 송달된 해에	
는 사본첨부하여 보고한다.		는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⑨직종기일(변론·경증등)에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출정하여 진작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한다.	
⑩판결보고		이 경우에도 제출 3일전에 사	
판결문이 접수된 때에는 그 사본을		본첨부 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 및 시장에게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가 보고하되 시장에게 보고시에는		나. 보건소장 기타 사업소장이	
상소여부에 대한 소송수행자와 의견을 당사자인 경우		당사자인 경우	
천기하여야 한다.		보건소장 또는 기타 사업소장	
⑪상고보고		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소송 사건	
1심판결에 불복상고하고자 할때에는		은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상고방침을 통하여 소송을 수행하되		(1) 민원봉사실(파견가아닌	
⑫판결문 접수일로부터 2주		사업소는 주무체) → 가 → (1)항과	
일내에 상고하여야 하며		동일	
		(2) 사법주관과	

<p>※ 가 ※(2) 항과 동일.</p> <p>다. 기타 사항</p> <p>(1) 본지침이외의 사람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의거 처리할것이며</p> <p>(2) 소송수행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을때에는 법무담당관실에 문의하여 협조를 받아 조치할것</p> <p>3. 소원 절무</p> <p>가. 구청장이 처분한대한 소원장을 법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변명서 및 기타 증거서류를부하여 송무과장(기획과) 외심사를 거쳐 시장(참조업무주관과)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p>나. 위변명서를 작성할때에는 6회인 척에 일자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그에 관련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다. 타기관에서 처분한대한 소원장을 접수한때에는 즉시 당해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p> <p>라. 소원장에 흠결이 있을때에는 이를 말고 기간을 정하여 (약 1주간) 보정여부를 확인한것으로 간주처리하겠음을 첨기도록 할것</p> <p>마. 기타사업소장의 처분에대한 소원장을 접수한때에는 주무과(또는 주무과의 심사를 거쳐 위사항에의거 처리할것)</p> <p>4. 타기관에의 보고</p> <p>가. 검찰청에의 보고</p> <p>책정소송은 소송재판부에 대응하는 검찰청(고발인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나찰·대법원인경우에는 대검찰청 중장)에 피소 전부판결 및 상고보고되어야 한다.</p> <p>나. 강사원에의 보고</p> <p>강사원법 제33조의 규정에의한 강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정부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이내에 솟장 또는 판결문抄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강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대호 강남의 142-3474 호 1966.</p> <p>9. 20)</p> <p>다. 총무처소청심사 위원회에의 보고</p> <p>시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어떤 자가 정치 및 본인의 의과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고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장을 거친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솟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사항을 총무처소청심사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제기자의 소속, 직, 성명</p> <p>(2) 제소일 사건번호</p> <p>(3) 판결된 때에는 판결일 및 그 주문</p>	
<p>5. 서 룰 일</p> <p>이예규는 1974. 1. 1부터 시행한다.</p>	

16-1.0 제425호 시 보 1974.1.10

별첨 1	
------	--

송 무 용 전	
수신	파장 197

사전영

사전번호

본전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처리와 차질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책 기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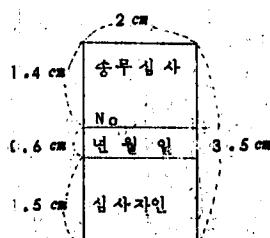
1. 4: 방침결정	년	월	일까지
2. 송대리인 및 송주행자회	년	월	일까지
3. 관계체사	년	월	일까지
4. 참인신청	년	월	일까지
5. 기타	년	월	일까지

파장

2부작성하되 첫째장은 미봉지로

별첨 2

송 무 심사 인



제 425 호

시 . 보

1974.1.10 16-11

번 첨 3

정 송 사 전 실 사 부

16-12 제 425호

시 보

1974.1.10.

별첨 4

소송수행자지정서

다음 소송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사건명:

2. 당사자: 원고

피고

3. 제 원 서울고등법원제1특별부

서기 19 년 월 일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 직인

(보건소장)

서울고등법원제1특별부 귀중

2부로 하되 첫째장은 미·수지로

제 425 호

시 보

1974.1.10. 26-13

197 년

소 송 위 임 장

당사자 천 고
 뵈 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대하여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동) 가 번지 호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하기 권한을 주어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판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4. 복대리인의 선임
 5. 목적물의 수령
 6. 공탁물의 일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7.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등신청에 대한 등의 담보권 소결정
- 정본의 수령 동위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포기

위 소송을 위임함.

서기 197 년 월 일

주소 서울특별시

위임인 서울특별시

○ 구청장
(보건소장)

○ ○ ○

책인

2267

16-14 제 425 호

시 보 1974.1.10

사명		1974.1.4.		
(◎ 1974.1.1.)		경기도연천군 지방행정 비영리 주사보		
인사과 행정주사		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생정사무관에 임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2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전출을		성동구근무를 명함.		
명함.				
대통령		(◎ 1974.1.5.)		
국무원교육부 행정주사		성북구 지방행정 이법산		
교수부 행정주사 김태수		수도사업소 서기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2호봉을 급함.		규정에의하여 잡봉 1월에처함.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서무과		성북구근무를명함.		
경리체장에 보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조규식		
대통령		보건소 주사		
인사과 지방행정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사무부		규정에의하여 전체에처함.		
용산구 산업과장에 보함.		마포구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사무처보에 임함.		종로구 지방행정 장영석		
3호봉을 급함.		보건소 서기		
공무원 교육원 고학과지도과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직무대리를 명함.		규정에의하여 잡봉 1월에처함.		
진영호		성북구근무를 명함.		
3호봉을 급함.		종로구 지방행정 김종일		
수도사업소 서기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동래문구근무를 명함. 의약과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처함. 남대문 지방행정 근로자회관 주사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처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보건소 세기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에 처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세기보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6 월에 처함.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세기보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에 처함. ④ 1974.1.6. 지하철 지방도록기사 이우빈 건설본부 지방도록기사로 주서함. ④ 1974.1.8. 용산구 지방행정주사 호남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 결정에 따른 73.8.18 자 (발령제 776호) 직위해제 를 동일자로 취소하고 73. 8.30자 (발령제 800호) 징계 처분 (파면) 을 동일자로 변경 전체에 처함. 중구 지방행정주사보 신동봉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 결정에 따른 73.11.29 자 (발령제 1104호) 징계처분 (감봉 1월) 을 동일자로 변경 전체에 처함.
--	---

구의정리2 과(유치증) 부칙을 명함.	지방보통 운수업 을 수질	충주군무를 명함.	전경숙
마포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5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수도사업소 지방보통기원 정구부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구회정리 1 과파전 (74.2.28 까지) 근무를 명함.	부나공원 관리사무소 주 대전설	김무현	황순남
8-1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 남부병원파전 (74.3.31까지) 근무를 명함.	한중수	1호봉을 급함.	방명우
서대문구 주 대전설 구회정리 2 과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개장 2 과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4.1.9.	지방건축기사보 면 한성 지방건축기사보 면 한성 지방보통기사 이연관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김관실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농촌지도사 이연관	경기도 양주군구리읍 서울특별시전일을 명함. 지방보통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조보연
		성북구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